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28호서식] <개정 2026. 7. 1.>

소방시설관리업 합병 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	처리기간	10일
합병 법인	업종		등록번호	제 호	등록일자	
	상호		대표자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				
	영업소 소재지				(전화:)	
합병 법인	업종		등록번호	제 호	등록일자	
	상호		대표자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				
	영업소 소재지				(전화:)	
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	업종		등록번호	제 호	등록일자	
	상호		대표자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				
	영업소 소재지				(전화:)	
임원 (감사포함)	성명					

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합병하는 법인): (서명 또는 인)

○○ 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신고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.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(경력수첩을 포함합니다)	수수료 2만원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등기부 등본 2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3.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